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 :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

◇ 제·개정 이유

○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,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◇ 주요내용

가. 조문 정비

○ “세법”과 “세법 등”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“세법 등”의 범위를 제1호에서 규정한 “세법”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함

나.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 현행화

○ 현재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방법을 우편·팩스 또는 직접 방문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함

다. 조직개편 반영

○ 직제 개편을 반영하여 조세정책과장이 조세 법령 해석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

라.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

○ 불복 중인 사안의 경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기존 예규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거나 법령 규정이 명백한 단순 문리 해석인 경우 및 해당 불복 등의 절차가 끝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상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제외함

마. 세법해석 사례 공개방법

○ 납세자의 개인정보 등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,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회신한 세법해석 사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